

의안번호	2211858
의 퇴 인	문대림 의원
회 답 일	2025. 11. 10.
추계번호	25F4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4조의36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 공제)	○ 기업이 식료품 제조업 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신설 - 공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는 기업 ※ 단, 기업은 식료품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영위해야함 - 공제율: 기업규모별로 구입비용의 25~30% ※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30%, 대기업 25% - 적용기한: 2030.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4조의36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04조의36 신설)
 - 개정안은 기업이 식료품 제조업 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

- 공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는 기업
 - ※ 단, 기업은 식료품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영위해야함
- 공제율: 기업규모별로 구입비용의 25~30%
 - ※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30%, 대기업 25%
- 적용기한: 2030.12.31.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이 농산물 구입시 계약재배로 구매하는 구입비용 규모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등의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 공제대상 등에 대한 업종요건 등이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은 공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업종, 농산물 구입비용 계산방법 및 구입 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 및 구입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또한, 향후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비용에 대해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계약재배로 구매하는 비용,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현황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하나,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계약재배 시장에 농업법인 17,955개, 기업 692,321개가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세액현황 및 계약재배 구매 규모 등은 파악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